

네일 미용 법안 마련의 중요성 인식과 기대효과  
-고객과 종사자를 중심으로-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Nail Art Bill and its Expected  
Effects - Focused on the Customers and  
Practitioners -

유 숙 희\*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surveys for 197 nail shop practitioners and 195 customers 1) to study the real condition of their hygiene awareness and safety consciousness and 2) to grasp their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a related bill so as to build an independent domain of business and to propose data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nail ca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nail care practitioners' experiences of safety education was very low, and that the customers attached importance to the necessity of nail salon practitioners' certificate and license and the nail treatment-related bill more than the nail care practitioners themselves.

In conclusion, the preparation of a nail art-related bill is required at the state level for the management of the safety and hygiene of national health, and systematic and regular education related to hygiene should be carried out.

**Keywords:** Nail shop, Nail-related law, Nail shop hygiene and Safety education

---

\* 한국네일디자인협회

## 1. 서 론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 및 문화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미(美)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미용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뷰티산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 뷰티산업 활성화를 국가정책 사업으로까지 채택하였으며, 2009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뷰티디자인 엑스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화 방안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

미용분야는 국내에 도입 된지 10여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일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대는 네일 분야의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네일 케어와 네일 아트는 독자적인 패션 아이템이 아닌 헤어와 메이크업, 의복 등과 함께 토털 패션의 완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대중화된 미용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화에 힘입어 네일 산업은 2009년 현재 8,000여억 원의 서비스 시장과 2,000여억 원의 제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네일샵은 전국적으로 단독 샵과 샵 인 샵(shop in shop) 등을 포함해 일부에서는 10,000여개로 추정하고 있지만 네일샵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은 실정으로 다만 7,000~8,000 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2].

이러한 양적인 증가추세와 실제적인 관련 산업의 육성에 비해 네일 산업 현장에서의 고객의 위생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미용 서비스업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사람의 피부와 신체를 시술 대상으로 하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술자와 고객, 고객 대 고객의 관계속에 호흡기 질환 및 피부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3].

네일 산업은 급격한 기술 발달과 함께 미용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미용 자격 제도는 광범위한 미용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네일샵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도구에는 가위, 니퍼, 푸셔 등과 수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전염병 전파와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만 구분되어 있어 네일 미용에 대한 적절한 위생관리 규정이 따로 없이 일반미용사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네일 미용 종사자는 여러 네일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위생법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문을 닫는 샵 인 샵(shop in shop)이 늘고 있으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시행 이후 네일 샵에 대한 구청 위생과의 단속 문제 등 고유한 업무영역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네일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기술, 기능, 위생에 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요구되는 법안이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가 위생에 관한 법안 부분이다. 이러한 네일 산업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네

일샵 종사자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와 네일 자격증 법안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고 독립적인 업무 영역 구축과 네일 국가자격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위생과 안전의식 실태 조사 및 면허성의 필요성과 네일 시술관련 법안의 필요성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 네일 관련 업체 200곳에 대하여 네일 관련 종사자와 고객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0년 1월 10일부터 2010년 2월 05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네일 종사자 220명과 고객 210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 설문지를 제외한 네일 종사자 197명과 고객 19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2 설문 조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 소득)과 네일 종사자의 근무 특성 7문항(네일 살롱의 입점 형태, 네일 살롱의 면적, 1일근무시간, 1주 근무 일수, 경력, 현 직장의 직위, 최초 네일 교육을 받은 기관), 네일샵 이용 고객 특성 5문항(최초 네일 살롱 방문 시기, 네일 살롱 1개월 이용 횟수, 네일 시술 1회 비용, 이용하는 네일 살롱의 입점 형태, 네일 살롱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네일 시술 관련 부작용과 네일 종사자의 안전 교육에 관한 경험 유무 2문항과

셋째, 네일 종사자의 자격증 및 면허증의 필요성과 네일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의 필요성 인식 2문항, 마지막으로 네일 시술 관련 법안의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 2.3 통계방법

연구 대상자의 네일 살롱 자격증 법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네일 종사자의 근무 특성, 네일 살롱 이용 고객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으며, 네일 관련 법안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는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다.

### 3. 결 과

####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네일 살롱의 자격증 법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네일 종사자와 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네일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54.8%, 30세 이상 40세 미만 45.2%로 분포 하였으며, 결혼 여부와 관련 미혼 76.6%로 기혼 23.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재학 포함)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월)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일 살롱 이용 고객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각각 42.1%와 42.6%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여부와 관련 미혼 65.6%, 기혼 34.4%로 미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 졸업(재학 포함)이 40.5%, 소득(월)은 600만원 이상이 20.5%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네일 종사자		고객	
		n	%	n	%
연령	20세 이상 30세 미만	108	54.8	82	42.1
	30세 이상 40세 미만	89	45.2	83	42.6
	40세 이상	-	-	30	15.4
결혼 여부	미혼	151	76.6	128	65.6
	기혼	46	23.4	67	3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62	31.5	32	16.4
	전문대학 졸업(재학 포함)	101	51.3	49	25.1
	대학 졸업(재학 포함)	34	17.3	79	40.5
	대학원 졸업(재학 포함)	-	-	35	17.9
소득(월)	100만원 미만	35	17.8	20	10.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2	56.9	38	19.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	25.4	32	16.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	34	17.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	31	15.9
	600만원 이상	-	-	40	20.5
Total		197	100.0	195	100.0

### 3.1.2 네일 종사자의 근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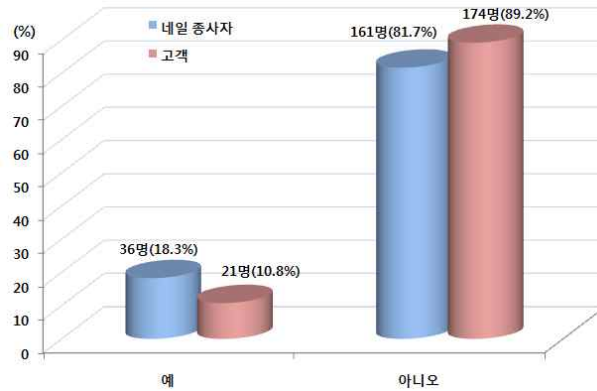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네일 살롱 종사자의 근무 특성은 <표 2>와 같다. 네일 살롱의 입점 형태는 단독점포 형태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네일 살롱의 면적은 5평 이상 10평 미만의 면적을 가지는 경우가 4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네일 종사자의 1일 근무 시간은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근무자가 각각 34.5%와 35.5%로 높게 나타났으며, 1주 근무 일수는 6일 미만 근무자에 비하여 6일 이상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3년 미만 47.7%, 3년 이상 5년 미만 35.0%, 5년 이상 17.3%로 분포 하였으며, 현 직장의 직위는 스텝 27.9%, 디자이너 28.9%, 실장 또는 매니저 31.0%, 원장 12.2%로 나타났다. 최초 네일 교육을 받은 기관은 미용학원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센터와 고등기술학교가 각각 16.8%로 조사되었다.

<표 2> 네일 종사자의 근무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 특성		n	%
네일 살롱의 입점 형태	단독점포	95	48.2
	쇼펍 내 입점	45	22.8
	지하상가 내 개방형	29	14.7
	미용 관련 업체 내	25	12.7
	기타	3	1.5
네일 살롱의 면적	5평 미만	40	20.3
	5평 이상 10평 미만	97	49.2
	10평 이상 20평 미만	45	22.8
	20평 이상 30평 미만	15	7.6
근무시간(1일)	8시간 미만	20	10.2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25	12.7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8	34.5
	10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70	35.5
	11시간 이상	14	7.1
근무일수(1주)	6일 미만	34	17.3
	6일 이상	163	82.7
경력	3년 미만	94	47.7
	3년 이상 5년 미만	69	35.0
	5년 이상	34	17.3
현 직장의 직위	스텝	55	27.9
	디자이너	57	28.9
	실장 또는 매니저	61	31.0
	원장	24	12.2
네일 교육 기관	문화센터	33	16.8
	미용학원	94	47.7
	고등기술학교	33	16.8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18	9.1
	기타(개인지도)	19	9.6
Total		197	100.0

### 3.2 네일 시술 관련 부작용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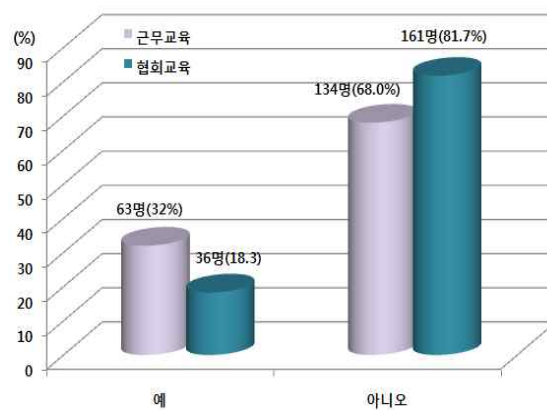
네일 샵에서 네일 시술을 받은 후 손톱의 갈라짐, 출혈, 손톱 변색,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 경험 여부에 대하여 고객은 10.8%가 경험하였으며, 네일 샵 종사자는 18.3%가 고객에게 네일 시술 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네일 시술 관련 부작용 경험 여부

### 3.3 네일 종사자의 안전 교육 경험 여부

네일 종사자의 시술 시 고객의 신체적인 부작용 및 위생 상태, 제품의 안전 상태에 대한 교육 여부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는 네일 샵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32.0%였으며, 제품 회사 및 각종 미용 관련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18.3%로 조사되었다[그림 2].



[그림 2] 네일 종사자의 안전 교육 경험 유무

### 3.4 네일 시술 관련 법안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네일 시술 관련 법안의 중요성에 대한 네일 종사자와 고객의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6문항 모두 네일 종사자에 비하여 고객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네일살롱 업주 및 종사자의 네일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 고객 4.49점, 네일 시술자 3.78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고객과 네일 종사자 모두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t=7.520$ ,  $p=0.000$ ).

다음으로 고객은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술자의 안전 및 책임의식에 관한 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이 4.42점,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상책임에 관한 보험의 필요성’이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네일 시술자는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원활한 피해보상을 하기위해 합리적인 피해 보상법제정의 필요성’ 3.51점, ‘네일의 안전, 위생 관련 법규의 독립 법제화 필요성’ 3.46점으로 나타났다.

<표 4> 네일 관련 법안의 중요성 인식과 기대효과

네일 시술 관련 법안 마련의 중요성	고객 / 네일 종사자	n	Mean±SD	t
네일의 안전, 위생 관련 법규의 독립 법제화 필요성	고객	195	4.19 ± .936	7.671**
	네일 시술자	197	3.46 ± .955	*
네일의 안전 위생 관련 법규의 독립 법제화 마련 시 고객 불만 감소 효과	고객	195	3.64 ± 1.096	3.363**
	네일 시술자	197	3.30 ± .907	
네일의 안전 위생 관련 법규의 독립 법제화를 통한 시술자(테크니션)의 위생관념 증가	고객	195	3.93 ± 1.026	6.016**
	네일 시술자	197	3.35 ± .889	*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원활한 피해보상을 하기위해 합리적인 피해 보상법제정의 필요성	고객	195	4.17 ± .988	6.854**
	네일 시술자	197	3.51 ± .907	*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술자의 안전 및 책임의식에 관한 교육의 법제화 필요성	고객	195	4.42 ± .804	12.098
	네일 시술자	197	3.40 ± .855	***
네일 시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상책임에 관한 보험의 필요성	고객	195	4.23 ± .931	8.943**
	네일 시술자	197	3.39 ± .917	*
네일살롱 업주 및 종사자의 네일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고객	195	4.49 ± .852	7.520**
	네일 시술자	197	3.78 ± .999	*

\*\* $p<.01$ , \*\*\* $p<.001$ ,

#### 4. 결론 및 제언

네일 미용이 고부가 가치 미용 산업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 규모의 증대와 산업의 확장추세에 반하여 위생관념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일 살롱 종사자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도 실태 조사와 고객과 종사자들의 관련 법안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 인식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여 독립적인 업무영역 구축과 네일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네일 시술 관련 부작용 경험 실태와 안전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네일 시술시 신체적 부작용 경험은 네일 종사자와 고객 모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 서울시 일부 네일 살롱의 위생환경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시술시 사용되는 네일 도구는 소독 후에 시술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네일 살롱의 경우 소독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시술자의 손을 세정하지 않고 고객의 손을 시술 한 점과 시술시 사용되는 타올의 경우 손과 발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등 감염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5]. ‘네일 시술 시 고객의 신체적인 부작용 및 위생상태’, ‘제품의 안전상태’에 대한 교육여부는 네일 살롱의 교육과 미용관련 협회의 교육 중 위생과 관련된 교육이 미흡하다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 된 바가 없는 네일 살롱 종사자의 자격증 및 면허증의 필요성과 네일 시술 관련 법안의 중요성에 대한 본 연구 결과 네일 종사자의 자격증과 면허증의 의무적 필요성에 대하여 고객과 네일 종사자 모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네일 시술 관련 법안의 중요성에 대한 네일 종사자와 고객의 인식도는 모두 네일 종사자에 비하여 고객의 인식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고객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효과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용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문화·세분화 되어가고 있으나, 제도가 이러한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업의 전문분야인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모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며 하루에도 한 종사자가 같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고객을 대하며 시술상 고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이 될 만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문분야별 위생지침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6].

따라서 네일 시술의 기술력, 위생과 관련된 안전적인 부분 모두 고객과 네일 종사자의 자격제도에서 중요시 되어 현행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미용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여 높아져 가는 사회적 수요와 기대치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7].

단순히 기술과 정책이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안전 및 위생관리 차원과 전략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네일 산업, 네일 종사자의 자격, 고객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네일 미용법을 만들어야 하며 위생과 관련된 안전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네일 산업을 발전시키고 네일 종사자와 고객을 동시에 보호하고 육성하여 현실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네일 산업의 위생과 안전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독립적인 업무 영역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후속연구가 조사, 분석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자들이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하는 네일 살롱의 네일 종사자와 이용 고객들이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성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상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5. 참 고 문 헌

- [1] 한영숙, “국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피부미용 산업기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4(1), (2009): 40.
- [2] 국내 네일산업 분석(<http://www.cmn.co.kr>).
- [3] 채용곤, “대구시내 미용실의 보건위생 실태”, 대한위생학회지, (2001): 10.
- [4] 손미정, “미용업종사자들의 위생지식도 및 실천행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 [5] 불만제로 손톱관리 해주는 네일 솥, 비위생적 + 비양식적으로 건강위협, (<http://www.artsnews.co.kr>).
- [6] 이창은, “피부미용업소의 위생관리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2006): 82.
- [7] 국회의원 文 姬 주취, ‘미용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2007): 9.